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96
----------	------

2020년 6월 22일  
운 영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5. 22. 노석래 의원(찬성자 10명)
- 나. 회부일자 : 2020. 5. 29.
- 다. 상정일자 : 제295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0년 6월 22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수요 및 내용 역시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시정 분야별 입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나. 주요내용

- 점차 다양해지는 법률적 자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촉자격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고문료 중 법률자문료 규정을 기존 1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9조제2항제2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1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 개정안은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자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자문료를 상향 조정하여, 점차 다양해지는 입법·법률적 자문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임.

### 2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자격의 범위 확대(안 제4조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는 의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입법 업무와 법률사안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있음.
-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이하 “조례”) 제4조는 입법·법률 고문의 자격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서울 소재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입법·법률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하고, 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은 점차 다양해지는 법률적 자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자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확대하는 내용임.

<표-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u>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u>	제4조(위촉) ① ----- -----. 1. <u>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u> -----

-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등록을 하고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서울 지방변호사회 등 14개 지방변호사회)에 입회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
-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14개 지방변호사회를 두고 있으며, 현재 전국 개업 변호사는 23,412명(2020. 5. 28 기준)이고 그 중 17,383명(74%)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업변호사임(붙임.1).
  - 참고로 전국 1,244개의 법무법인 중 833개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관(재조경험) 및 다양한 경험 등을 소유한 우수인력은 대부분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전국 개업변호사의 74% 이상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며, 지방변호사회는 각 지방을 대표하고, 그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다양해지는 법률적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입법·법률고문의 자격범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확대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법률대응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다만, 전국의 개업변호사의 74%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라는 점, 서울시 의회위원의 입법활동 지역이 서울시라는 점 등으로 비춰보아, 입법·법률고문 자격의 범위를 대한변호사협회로 확대하는 것의 실익이 크지 않음.
  - 현재 제10대 의회 입법·법률 고문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법률자문 평균소요일은 7.3일<sup>1)</sup>로 비교적 원활한 회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

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2조(직무)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표-2> 제10대 의회 입법·법률고문 실적 현황

(2018. 7. 1 ~ 2020. 6. 12. 기준)

구분	자문건수	평균소요일	소송수행(건)
제10대 의회	138	7.3	기관쟁송 1건(승소) 형사소송 1건(진행 중)

- 소송수행 또한 시 관할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이며, 중요 소송 및 긴급소송에 대한 협의, 의회 현안에 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등 시급성을 요구하는 회의 개최 시 타 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인 경우 입법·법률고문 운영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제기 될 수 있음.
- 참고로 서울시도 법률고문의 자격<sup>2)</sup>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17년 의회는 전문화·고도화되는 의정환경에 따른 입법·법률자문 수요를 고려해,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는 조례개정('17. 12. 20)을 한 바 있음(붙임. 2).

2)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위촉) ① 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3 법률자문료 인상(안 제9조제2항제2호)

- '08년부터 의회 입법·법률고문 수당체계는 월 정액고문료 20만원을 지급하고, 자문건수 2건을 초과하는 경우 1건당 10만원의 법률자문료를 적용해 지급해왔으나,
- '14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매월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고문료(20만원→10만원)를 낮추고, 실적에 따른 자문료 지급을 위해 상향(10만원→20만원)조정하였음<sup>3)</sup>.
- 이에 서울시와 의회 고문의 자격범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된 변호사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체계 및 자문비용에 따른 의회 입법·법률고문들의 현실화 요구가 발생함에 따라<sup>4)</sup>, 의회는 '17년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문료 지급체계 등을 서울시 법률고문과 같이 규정하였음(조례 제9조제2항).
- 개정안은 법률자문료를 기존 1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자문료를 개정안과 같이 상향조정했을 경우, 향후 5년 동안 예상되는 비용은 9,750만원이며, 연간 1,9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3) 서울시는 4년간('08년~'12년) 자문실적이 전무한 고문에게 지급되는 고문료 발생의 문제점과, 소액의 법률자문료(건당 10만원)로 인한 법률자문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월정고문료를 하향조정하고 실적에 따라 자문료를 상향(건당 20만원)조정함.

4)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서울시 법률고문과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에게 시정 관련 법률자문을 동일하게 각각 2건을 의뢰 할 경우 서울시 법률고문은 월 50만원,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월 20만원을 지급받음.

<표-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고문료·회의비 등) ① 입법·법 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정액고문료와 법률자문료 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1. 정액고문료 : 월 10만원 2. 법률자문료 : 1건당 <u>20만원</u>	제9조(고문료·회의비 등) ① -----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법률자문료 : 1건당 <u>30만원</u>

- 개정안과 같이 다양한 입법·법률 수요 대응과 의정활동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고문의 자문료를 인상하고자하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17년 조례개정을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구성된 서울시 법률고문의 수당과 의회 입법·법률고문 수당의 체계를 동일하게 개편한 점 등은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현행 조례는 자문사항의 내용·성격에 따라 법률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요소송과 긴급한 소송, 의회 현안에 대한 입법·법률문제의 협의에 따른 회의비 또한 지급토록 하고 있음.<sup>5)</sup>

5) 제9조(고문료·회의비 등)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내용·성격에 따라 법률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정한 사안으로 장기간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2. 국제관계 및 방대한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④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만원(부가세 미포함)의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급한다.  
 1.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 한편 담당부서(입법담당관)는 현행 자문료의 경우 의회와 서울시가 동일하나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이유는 없으며, 그간 법률자문을 통해 의원의 의정 활동에 크게 기여한 점과 앞으로도 충실한 자문의견 회신 등의 기대효과 및 의회의 선도적인 운영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4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격범위 확대 및 법률자문료의 인상은 의정환경의 복잡화·전문화 등으로 인한 입법·법률자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개정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 전국 개업변호사의 74% 이상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고, 서울시의회 의원의 입법영역이 서울시라는 점,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에 대한 협의, 의회 현안에 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등 시급성을 요구하는 회의 개최 시 자문에 대한 적시성 등을 감안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법률자문료 인상에 따라 서울시 및 타 의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고, 다른 시·도의 법률자문료 인상의 기준이 되는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찬성)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노식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96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2일

발 의 자 : 노식래 의원(1명)

찬 성 자 : 고병국·김기덕·김정태  
김제리·김호진·김호평  
박상구·박순규·양민규  
우형찬 의원(10명)

###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수요 및 내용 역시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시정 분야별 입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 점차 다양해지는 법률적 자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촉자격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제1항제1호 개정).

- 고문료 중 법률자문료 규정을 기존 1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9조제2항제2호).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  
록한”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촉) ① <u>입법·법률고문</u>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p> <p>1. <u>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u></p> <p>2. 3. (생략)</p> <p>② ③ (생략)</p>	<p>제4조(위촉) ① ----- ----- -----.</p> <p>1. <u>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u> -----</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고문료·회의비 등) ① (생략)</p> <p>② 고문료는 정액고문료와 법률자문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미포함).</p> <p>1. (생략)</p> <p>2. 법률자문료 : 1건당 <u>20만원</u></p> <p>③ ④ (생략)</p>	<p>제9조(고문료·회의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30만원</u></p> <p>③ ④ (현행과 같음)</p>



○ 월정수당 ≒ 97,500천원

- 5년간 월정수당 =  $\sum_{i=1}^5$ (연간비용)<sub>i</sub>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 ~ 2025년)

- 연간비용 ≒ 100천원(법률자문료 인상분) × 65건(최근 3년 평균 법률자문의뢰 건수) × 3명  
(건당 법률자문인 수) = 19,500천원

<법률자문료 변경 내용>

구 분	지 급 액 (1건당)		
	개정 전	개정 후	증감
법률자문료	200천원	300천원	100천원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주 무 관 김민호

☎ 02-2180-7932

e-mail : waterkim@seoul.go.kr